

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법령정비과	배포일시	2021. 11. 23.(화) / 총3장 (붙임 포함)
담당자	과 장 임지연 사무관 김신영 (044) 200-6580		

노무사,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...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늦어질수록 과태료 커진다

- 23일, 「공인노무사법 시행령」 등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-

□ 법제처(처장 이강섭)는 23일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○ 5개 부처 소관 6개 대통령령*에 대한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일괄하여 정비를 추진했으며,

*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정비 목록은 붙임 참조

○ 이번 정비에 따라 노무사,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등이 의뢰인, 이용자 대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·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.

□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보험·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 정액* 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만 되는 정액**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,

* 청소년 수련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위반 → 200만원

** 노무사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→ 100만원^(1차), 150만원^(2차), 200만원^(3차)

- 고의로 장기간 보험·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, 과태료 납부 후 보험·공제의무를 가입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보험·공제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.
- 이번 정비로 보험·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증액하는 방식*으로 개정하여,
- * (예시) 300만원^(~1개월 미만), 500만원^(1개월 이상~3개월 미만), 700만원^(3개월 이상~6개월 미만) 등 보험·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
- 보험·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, 보험·공제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강섭 처장은 “이번 일괄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·공제 가입 의무 위반의 사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”면서,
- “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불편·불합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번호	소관	법령	과태료 부과대상(법정 상한액)	
			기존 과태료(만원)	정비안(만원)
1	고용노동부	공인노무사법 시행령 (별표 4)	개업노무사·노무법인의 보증보험 가입(200만원)	
			1차: 100 2차: 150 3차: 200	미가입 30일 이하: 50 미가입 30일 초과 60일 이하: 100 미가입 60일 초과 90일 이하: 150 미가입 90일 초과: 200
2	행정안전부	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(별표 13)	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(500만원)	
			1차: 100 2차: 200 3차: 400	미가입 10일 이하: 50~100 미가입 10일 초과 30일 이하: 80~200 미가입 30일 초과 60일 이하: 100~300 미가입 60일 초과: 200~400 *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 차이
3	산업통상 자원부	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(별표 8)	설비인증을 받은 자의 보험·공제 가입(1천만원)	
			1차: 200 2차: 500	미가입 30일 이하: 200 미가입 30일 초과: 200+31일째부터 1일마다 2만원 합산 (500만원 한도)
4	과학기술 정보통신부	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(별표 4)	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험가입(1천만원)	
			1차: 350 2차: 700 3차: 1,000	미가입 2개월 이하: 500 미가입 2개월 초과 4개월 이하: 600 미가입 4개월 초과 6개월 이하: 700 미가입 6개월 초과 8개월 이하: 800 미가입 8개월 초과 10개월 이하: 900 미가입 10개월 초과: 1,000
5		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(별표 2)	임시허가 받은 자 등의 책임보험가입(1천만원)	
			1차: 350 2차: 700 3차: 1,000	미가입 1개월 미만: 300 미가입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: 500 미가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: 700 미가입 6개월 이상: 1,000
6	여성가족부	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(별표 5)	청소년 수련시설 보험가입(300만원)	
			200	미가입 10일 이하: 10 미가입 10일 초과 30일 이하: 10+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합산 미가입 30일 초과 60일 이하: 30+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 합산 미가입 60일 초과: 120+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합산 (200만원 한도)